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51
----------	-------

발의연월일 : 2023. 5. 9.

발의자 : 박덕흠 · 이현승 · 류성걸

박대수 · 김성원 · 조명희

백종현 · 성일종 · 김용판

이종성 · 박정하 · 박진

홍문표 · 안철수 · 송석준

홍석준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등을 통해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 수행을 위해, 산림청장은 도시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 국민들의 주요 여행 및 여가 활동이 등산 및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 내 활동으로 다양화되고,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숲세권’ 선호 등 숲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로수 등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를 실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행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시에 가로수의 생육불량, 도시 시설 설치시 우선 제거, 잘못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 이용 활성화 등 산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의 대표성과 객관성, 실행력을 강화하여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 · 관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 제3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 · 보전 · 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숲 ·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 · 보전 · 활용에 관한 사항</u></p>
<p><u>6.·7. (생 략)</u></p> <p>③ ~ ⑦ (생 략)</p> <p>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6명</u>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되며,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u>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u>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7명</u>-----</p> <p>-----.</p> <p>③ -----</p> <p>-----</p> <p>---<u>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u>-----.</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숲 ·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u></p>

④ · ⑤ (생 략)	<u>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산 립 청장이 추천하는 사람</u> ④ · ⑤ (현행과 같음)
-------------	---